

1. 總豫算規模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2 회 추 경	비 율
계	65,598	61,523	4,075	6.6%
일 반 회 계	59,392	55,780	3,612	6.5
특 별 회 계	6,206	5,743	463	8.1
의 료 보 호 기 금	2,030	1,567	463	29.5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29	129	—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50	250	—	—
주 차 장	892	892	—	—
주거환경개선사업	825	825	—	—
장립유수지이설사업	2,080	2,080	—	—

2. 一般會計 歲入歲出

□ 歲 入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2 회 추 경	비 율
계	59,392	55,780	3,612	6.5%
지 방 세	15,469	14,364	1,105	7.7
세 외 수 입	14,892	14,732	160	1.1
경 상 적 세 외	5,696	5,696	—	—
임 시 적 세 외	9,194	9,036	160	1.8
조 정 교 부 금	19,567	18,169	1,398	7.7
보 조 금	9,194	8,445	749	8.9
국 고 보 조 금	3,906	3,829	77	2.0
시 비 보 조 금	5,288	4,616	672	14.6
지 방 채	270	70	200	185.7

□ 歳 出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2 회 추 경	비 율
계	59,392	55,780	3,612	6.5%
의 회 비	692	684	8	1.2
일 반 행 정 비	19,494	19,622	△128	△0.7
사 회 복 지 비	13,726	13,112	614	4.7
산 업 경 제 비	921	792	129	16.3
지 역 개 발 비	22,191	19,127	3,064	16.0
문 화 체 육 비	1,395	1,392	3	0.2
민 방 위 비	126	135	△9	△6.7
지 원 및 기 타	847	916	△69	△7.5

3. 一般會計 歳入・歳出 内譯

(歳入 3,612,222 + 既定削減 1,869,450千 원)

□ 追更財源(A+B)	5,481,672천 원
□ 歳入(A)	3,612,222천 원
○ 地方稅	1,105,000천 원
• 면허세(1,411,000 → 1,603,000)	192,000
• 재산세(3,588,000 → 4,401,000)	813,000
• 사업소세(2,191,000 → 2,291,000)	100,000
○ 稅外收入	160,000천 원
• 도로굴착 복구비(700,000 → 1,100,000)	400,000
• 해양고 진입로 정비공사 수탁	50,000
• 과년도 수입(300,000 → 10,000)	△290,000
○ 調整交付金	1,398,000천 원
• 조정교부금(18,169,000 → 19,567,000)	1,398,000

○ 國・市費補助金	749,222천 원
• 국고보조금(3,829,013 → 3,906,242)	77,229
• 시비보조금(4,615,693 → 5,287,686)	671,993
○ 地方債	200,000천 원
• 피정3동사 신축 청사정비 기금	200,000

□ 既定豫算削減(B)	1,869,450천 원
• 경상예산(7건)	25,485
• 사업예산(14건)	1,843,965

□ 歲 出	5,481,672천 원
-------------	--------------

○ 必須經費	714,798천 원
• 의회관련 경비(일비 인상 등)	31,350
• 보건소, 동청사 공공요금	9,683
• 지방채 상환(청사정비 기금)	26,000
• '93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	39,814
• 도로굴착 복구비(330a → 500a)	400,000
• 해양고 진입로 정비 수탁공사	50,000
• 국・시비보조사업(경상사업 10건)	148,488
• 통・반장 수당 등	9,463
○ 經常事業費	886,486천 원
(一般行政)	(45,452)
• 소송관련 경비(15 → 20건)	6,000
• 하반기 민원행정 중점 추진 수용비	6,360
•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 추가	5,508
• 주민세 전산화 추진	5,614
• 지방세(구세)징수 관련 경비	9,839
• '95 회계관련 장부구입 등	12,131

(社會福祉)	(302,228)
• 괴정1동 경로당 보수(난방시설외 1종)	6,400
• 무단투기 일반폐기물 처리비(100톤)	8,000
• 쓰레기 종량제 관련 수용비(전단,현판 등)	22,252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5종)	247,376
• 보건소 운영 관련 수용비 등	18,200
(地域開發 等)	(538,806)
• 건축물 대장 이기 작업	10,402
•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15개소)	60,000
• 도시계획 도로개설 편입토지 확정 정산(3건)	412,080
•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 배상	20,899
• 동운영 관련 수용비(급식, 비품 등)	16,470
•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 측량 등	18,955
○ 投資事業費	4,015,545천 원
• 도로건설(신규 2, 추가 5건)	2,743,000
• 도로유지 관리사업(3건)	605,8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9건)	524,000
• 사회복지 등 사업(7건)	142,745
○ 豫備費(574,900 → 439,743)	△135,157천 원

4. 特別會計

□ 醫療保護基金	(豫算規模 1,567,125 → 2,030,329千원)	463,204천 원
○ 歲 入		
• 국고보조금(1,317,206 → 1,638,378)		321,172
• 시비보조금(230,610 → 372,642)		142,032
○ 歲 出		
• 의료보호환자 진료비(8,319명)		463,204

(豫算規模 891,693千원)

☐ 駐車場特別會計

規模變更 없음

○ 歲 出

- 주·정차 단속원(6명) 인건비 등 5,586
- 예비비(615,591 → 610,005) △5,586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현황

☐ 일반회계 세출: △544,092천원(별첨)

○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출부문: △6,400천원
- 특별회계 세출세입: 원안의결

○ 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출부문: △537,692천원
- 특별회계 세출세입: 원안의결

6. 검토의견

☐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부문

- 지방세 목표액 초과징수 1,10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초과 징수예상 160백만원
- 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추가보조 2,147백만원
- 지방채 발행수입 200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 세출부문

- 일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의회관련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지출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비 및 겨울철 산화방지 대비를 위한 산업경제비 지출 등이 반영

○ 특별회계 부문

- 의료보호기금 국·시비보조금 463백만원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로만 반영되었음.

□ 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건설관리비 중 건설준설 인부임은 '94년도 부산시와 부산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의해 인상조정으로 45백만원 예산편성
- '92~'94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6건 구거복개 등 5건의 준공후 예산집행 잔액 1,821,665천원을 경정 감액하고 2회 추경에 도로개설 신규사업 2건 1,276백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3건 606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19건 524백만원, 기정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는 도로개설 5건의 기정예산 부족액 1,467백만원이 총당 계상되어 있어 예산과부족 편차 발생원인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의 투자소요 사업비가 중기재정 계획과 당해년도 본예산 편성간에 괴리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산과부족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복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취약한 지방재정의 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 편성시 도시계획의 도로개설 편입토지, 지장물권, 영업보상 등 투자소요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추진방법, 조직기능 강화 등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 예비비 기정예산액 615,591천원에서 주정차 단속원 기본급 1,896천원과 무전기 교체 및 수리비가 3,690천원 계상되어 예산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잔액 610,005천원의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예산안 문제점 조치 방안

-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도로유지 관리사업 다대1동 소재 해양경찰청 정비창 진입도로 정비공사비 505백만원을 사업시행 선정에 타지역과 우선 순위를 비교해 볼 때 다소 객관성이 결여되어 우리구 '94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도로부문 투자계획에 '96년까지 연장구간 공사로 되어 있는 1순위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조정하고자 위원회에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절차를 밟는 등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첨부 :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1부 끝.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단체장 제출 예산액	위원회 수정액		수 정 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비고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총 계			577,092	544,092		32,000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는 여건	P81
	가정복지	가정복지	6,400	6,400		—	변동 사업시행 곤란	
도시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	60,000	28,000		32,000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P99
	관 리	관 리 (일반운영비)					→낙동로 지역 8개소 우선시범 시행후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따 라 '95본예산반영	
건설사업	건설관리	건설행정	4,692	4,692		—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	P101
		(일반운영비)					임차→중기 임차료 기존예산 집 행잔액 보유 및 사업확보 물량 미확정	
건설사업	건설관리	도로유지	505,000	505,000		—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주변	P106
		관 리 (시설비)					도로 정비공사→증장기 계획과 현지여건 등 사업 우선순위에 객관성 결여	